



제 8064 호

경기도보

발행일 2026년 8월 10일

발행 경기도

도보는 공문으로서의
효력이 있습니다.

경기도 공고 제2026-2086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경기도 공고 제 2024-1741호)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.

2026. 8. 10.
경 기 도 지 사

1. 허가구역 대상지역

대상지역		면적(km ²)	비고
경기도	평택시 현덕면 권관리·장수리, 포승읍 신영리 일원	2.32	경기경제 자유구역 현덕지구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6년 8월 15일 ~ 2028년 8월 14일(2년)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	6㎡ 초과

※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기준면적의 10% 적용

4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생략(기존 허가구역과 동일)

5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: 생략(기존 허가구역과 동일)

※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확인 가능